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
절기절약,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
http: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소프트웨어산업과 김도균 과장(02-2110-5121), 오정열 주무관(4786)

발주기관 SW분리발주 제외사유 SW품목별로 작성해야

-지식경제부 「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」 고시 개정-

1. 고시 개정내용

□ 공공발주기관은 SW사업 발주시 종전 사업별로 작성하던 분리발주* 적용 제외사유를 품목별로 작성하여 명시해야 함

* 상용SW를 직접 생산하는 SW기업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은 총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공공SW사업인 경우 개별 SW가격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 SW 다량구매 가격 5천만원 이상인 국가인증 SW(GS, 행정업무용, CC, NEP, NET 국가인증 SW 또는 국가정보원 검증/지정 SW)는 분리발주 하여야 함(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)

○ 또한 국가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SW제품도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발주기관의 자발적인 분리발주 기회를 확대하였음

□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「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」 고시를 개정하고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함

【새로운 고시 구체내용】

√ 종전 임의로 작성하던 사업별 제외사유를 SW품목별로 작성 게시하도록 의무화하여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분리발주 제외 적용 최소화(비고 4, 별표 신설)

√ 발주기관 재량에 의한 분리발주 할 수 있는 경우*를 추가(비고 3)

* ①총 사업규모 10억원 미만, ②SW가격 5천만원 미만, **③국가인증 획득하지 않은 제품**

2. 품목별 제외사유 작성 배경

□ 분리발주에 대한 발주기관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제도적인 틀안에서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적용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

○ 또한 기관 평가지표에 반영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비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발주 적용률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

<최근 3년간 SW분리발주 적용 현황>

구 분	2009년	2010년	2011년
분리발주 적용률	32.6%	45.0%	58.0%
지방자치단체	3.4%	12.5%	12.5%
제외사유 적용비율	21.4%	26.7%	30.7%

3. 향후계획

□ 지식경제부는 고시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발주 적용률 제고를 위해 2013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적절한 비율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임

붙임 : 「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」 개정 고시

붙임 : 「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」 개정 고시

◎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-41호

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-54호(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3년 2월 22 일

지식경제부장관

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

제 정 2007.11.19.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-42호
일부개정 2009.6.2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-120호
일부개정 2010.2.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-54호
일부개정 2013.2.2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-41호

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대상으로 한다.

1.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(GS인증) 제품
2. 「전자정부법」 제50조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제품
3. 「국가정보화기본법」 제38조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인증(CC인증) 제품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5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제품
4.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(NEP) 제품
5.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(NET) 제품

비고 1. 총 사업규모 또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.

2.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.
3. 총 사업 규모가 10억원 미만이거나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 또는 본문의 각 호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라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.
4. 분리발주로 인하여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거나,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,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지연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 단, 별지 서식에 의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6일까지로 한다.

[별지 서식]

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목품별 제외사유서

번호	소프트웨어 품목	제외사유	비고
1			
2			
3			
4			
5			
6			
7			
8			
9			
10			